

9. 소득세법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5,565호 1997. 12. 31

주요 골자

- 가. 지금까지는 증권투자신탁의 운용수익중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양도수익에 대하여만 비과세하고 있었으나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벤처기업주식의 양도수익에 대하여도 비과세하도록 함(령 제23조).
- 나.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받게 되는 퇴직보험금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금을 퇴직소득에 합산하도록 하고, 기업이 종업원을 위하여 퇴직보험의 보험료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신탁금을 납부하거나 불입하는 경우에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등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과 관련된 세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령 제38조·제42조의2 및 제55조).
- 다. 지금까지는 사용용도에 관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로 보아 손비로 인정하는 기밀비의 한도가 출자금의 1퍼센트와 수입금액의 0.035퍼센트를 합한 금액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동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전체 접대비 필요경비지정한도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령 제83조).
- 라. 영유아보육보험의 보육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보육비용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시설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납부하는 보육비용으로 함(령 제110조의2).
- 마. 지금까지는 피상속인이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상속인들이 각각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각 상속인 별로 1주택씩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던 것

을 앞으로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택중 1주택에 대하여만 동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령 제155조). <법제처 제공>

개 정 이 유

소득세법의 개정(1997. 12. 13. 법률 제5424호)으로 영유아보육시설의 보육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기업의 소비적인 경비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손비로 인정되는 접대비의 한도를 축소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 신고조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증권거래법 제3조제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2. 증권거래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으로서 그 주권이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되는 법인

제23조의 제목 "(증권투자신탁)"을 "(증권투자신탁 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한

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외거래종목으로 등록된"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제2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은 선물거래법에 의한 투자

기금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한다.

제26조제1항중 “근로자들이”를 “근로자들의”로, “구성한”을 “구성된”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2호 각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제38조제1항제12호에 다음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 신탁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절에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

제38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중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으로

한다.

제4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 용역(법 제21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와 이 영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말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퇴직관련 보험 또는 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을 포함한다.

1. 단체퇴직보험의 보험금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

②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한다.

제45조제6호나목중 “이자는”을 “신탁의 수익은”으로 한다.

제48조제4호중 “장기할부판매”를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장기할부판매”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제38조제12호가목 또는 다목에서 규정하는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제55조제1항제26호중 “제25호”를 “제26호”로 하여 동호를 제27호로 하고, 동항에 제26호를 다음고 같이 신설한다.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제5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은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또는 신탁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등에서 직전 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2이상의 보험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보험 또는 신탁의 보험료등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55조제4항중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를”을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등을”로, “단체퇴직보험료지급명세서”를 “퇴직보험료등지급명세서”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사업자가 보험금등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등에 대한 보험료등에 상당하는 금액
2.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보험금등
3. 사업자가 보험 또는 신탁의 취급기관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 당해 배당금

제65조제1항제3호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8조제1항중 “사업자는”을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공과금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외의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2.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제83조제3항 본문중 “합계액”을 “합계액과 조세감면규제법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합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제84조제4항 본문중 “신용카드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 본문중 “법 제35조제1항”을 “조세감면규제법 제98조의3”으로 하며, 동호가목중 “100분의 75”를 “100분의 80”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70”으로 하며, 동호 다목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60”으로 하고, 동호 라목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84조제4항제2호가목중 “100분의 75”를 “100분의 80”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70”으로 하며, 동호 다목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60”으로 하고, 동호 라목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총리령이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화폐성외화자산·부채중 회수 또는 상환기일(분할 회수 또는 분할 상환의 경우에는 최종 회수기일 또는 최종 상환기일)이 당해 연도 종료일부터 1년 후에 도래하는 것에 대한 차손익은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당해 외화자산·부채의 잔존 회수 또는 상환기간(당해 연도중에 이미 경과한 기간을 포함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환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차손금과 차익금으로 구분하여 이를 각각 계상하여야 한다.

제1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2(소득공제되는 보육비용의 범위) 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보육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시설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말한다.

제112조제1항중제1호중 “60제곱미터”를 “85제곱미터”로 한다.

제131조제1항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에 제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7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제132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동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

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3.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단계판매업자로부터 하위판매원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후원수당을 받는 자

제141조제4항제2호중 “인건비등”을 “인건비, 수입금액 등”으로 한다.

제144조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중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을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하고,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투입량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율

제14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의 자산이나 권리(영업권 및 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제15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

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제15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법 제94조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항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

1. 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2. 중소기업(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7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하기 위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3.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협회등록법인이 협회등록전 또는 협회등록 후에 발행한 것으로서 협회증개시장에서 양도하는 것

4.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 까지 협회등록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협회중개시장에서 취득하여 협회중개시장에서 양도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한 매매거래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 제16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물

가.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건물

취득당시의 제164조제5항의 가액 × 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의 제164조제3항의 가액 × 10/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1/100)

3. 제157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자산(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7/100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1/100

제164조제1항 전단중 “당해 토지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중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보유기간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양도일 전후 또는 취득일 전후의 기준시가의 상승률”로 한다.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지적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지번이 새로이 부여된 토지
3. 지적법에 의한 합병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제165조제1항제2호중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주식등”이라 하고, 동항제3호가목중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1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으로 한다.

제166조제2항제3호 전단중 “자산”을 “자산(제3항 각호 및 제4항제1호·제2호 또는 제157조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79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조세조약에서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법인의 주식양도 소득에 대하여 그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에 법 제119조제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제9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은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 총액중 법 제94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제157조제5항 각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으로 한다.

⑪ 제158조제3항의 규정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의 계산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

제185조제1항 및 제2항중 “소득세징수액 집계표”를 각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한다.

제190조제1호 본문중 “단기금융회사등이”를 “단기금융회사등과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가”로 한다.

제193조제3항 후단중 “원천징수세액명세를”을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등”이라 한다)을”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그 지급내용을”을 각각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등을”로 한다.

제201조의2제1항중 “원천징수의무자는”을 “원천징수의무자(제1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말정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으로 한다.

제211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⑤사업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⑥사업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내용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전자계산조직이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곱한 것으로 본다.

제21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24조제4항 전단중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을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양도신고일(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양도일을 말한다)에”로 한다.

— 부 칙 —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77조·제9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0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8조·제77조·제9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4조(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5조(사업장현황보고에 따른 조사·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6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7조(원천징수영수증 및 계산서의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3조·제211조 및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교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9조(협회등록법인 주식등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157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57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공과금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특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77조제1항에 규정된 공과금중 제77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제77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으로 보지 아니한다.